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3. 23.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2년 3월 10일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2년 3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2. 3.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에 있는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청년기업 지원 사업(안 제5조)
- 우수사례 발굴·포상 및 업무의 위탁(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안건은 영등포구 청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는 청년기업의 요건을 영등포구 관내 거주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으로서 대표자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규정하였음. 이는 청년의 범위를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지방공기업에서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청년창업자를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각기 다른 서울시 정책별 청년의 범위를 통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도 청년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연령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에서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에 대한 자금, 교육 등의 지원,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등 청년기업의 지원 사업을 규정함.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촉진협약을 맺을 수 있으며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 경제활동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할 수 있게 함.
 - 안 제8조에서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함.
 - 중소기업 육성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 수립과 중소기업 육성에 대하여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대표자가 청년인 청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7
------------	-----

발의년월일: 2022년 3월 일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영등포구에 있는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
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안 제4조)

나. 청년기업 지원 사업(안 제5조)

다. 업무의 위탁 및 우수사례 발굴·포상(안 제7조~제8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2. 3. 8. ~ 3. 14.)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

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교육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구매촉진 지원) 구청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7조(우수사례 발굴·포상)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